

		번호 01-5		
제 목	국문	진료용 재료의 의료보험 별도보상 기준제시		
	영문	Reasonable Reimbursement Criteria for Medical Supplie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 민 선, 박 은 철, 조 우 현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Min-Sun Kang, Eun-Cheol Park, Woo-Hyun Ch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 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 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현행 의료보험 수가는 기술(技)에 해당하는 수가와 물(物)에 해당하는 수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技)과 물(物)의 분리원칙이 진료용 재료수가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별도보상 하도록 명시된 진료용 재료의 경우에도 사례별 검토를 통하여 별도급여여부를 결정하며 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적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현재 의료보험에서 별도보상 되고 있는 진료용 재료를 파악함으로써 별도로 보상이 되는 진료용 재료의 근거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발생된 재료의 별도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진료용 재료에 대한 의료보험 별도보상 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현황분석, 텔파이 분석, 유권해석사례검토를 거쳐 장·단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현황분석의 단계에서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집」을 근거로 하여 진료재료 관련규정, 진료행위 항목별로 별도보상 되는 진료재료의 산정지침을 정리하고 별도로 보상되는 진료재료 산정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 기술하였다. 텔파이 분석 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별 임의비 급여 기준과 진료용 재료 보험인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유권해석사례검토 단계에서는 1981년부터 1998년 10월 사이의 유권해석사례 4675건 중 순수하게 진료용 재료와 관련된 사례 662건 중에서 그 내용에 진료재료의 명칭과 관련행위가 명확히 기록된 사례 중 1998년 10월 기준으로 보험에 등재된 가격을 알 수 없는 재료에 대한 사례는 제외한 195건에 대하여 기존 유권해석의 급여여부 결과와 텔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진료용 재료의 별도급여여부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시 급여여부 결과와의 일치도를 비교하였다.</p>				

3. 연구 결과

진료용 재료 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진료용 재료비는 종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료용 재료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집」에 명시된 별도 인정재료 항목과 인정기준 철차 후 등재된 진료재료로 한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진료용 재료의 급여여부는 별도인정항목으로 명시된 재료일지라도 사례별 검토를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되었다.

현행 요양기관에서 진료용 재료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재료이지만 보험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험여부가 검토 중인 신규 진료재료, 소정 진료재료보다 고가인 진료재료, 진료재료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였다.

기존 유권해석의 급여여부 결과와 멜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진료용 재료의 별도 급여여부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급여여부 결과와의 일치도 분석결과는 진료재료의 일정가격을 급여기준으로 할 때 적절수준이 7,500원이었으며, 진료행위료 대비 진료재료 차지비율을 급여기준으로 할 경우 적절수준은 0.3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진료재료의 별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으나 그 동안의 유권해석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별도보상 항목을 명시하고 이 항목에 포함되는 진료재료를 별도급여 하면서 사례별 검토에 있어서는 진료재료의 가격이 일정가격이상이거나 행위수가 대비 진료재료의 비율이 어느 비율 이상인 재료에 대하여서는 별도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별도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급여인정범위를 잘 반영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4. 고찰

이러한 비교방법으로 현재의 진료재료인정범위를 반영하는 기준을 구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행위수가 대비 진료재료의 가격비율을 가지고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석에 사용된 행위수가가 진정한 의미로 행위료만을 반영한 수가가 아니라 일부는 행위수가에 재료비용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 별도보상 항목인 경우에는 행위수가에 진료재료비가 제외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자료원으로 복지부 유권해석사례집을 이용한 것에 있어서 편의(bias)된 자료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해석을 거친 재료라면 이미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될 수 있었던 재료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편적인 진료 행태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나 진료용 재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의 기술(技)과 물(物)의 분리원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꼭 필요로 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가보존을 이를 수 있는 대안이 필요시 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료용 재료의 별도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종별가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진료용 재료비와 행위수가가 통합된 하나의 수가체계로서 발전시켜 나감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